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11. 24(금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

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36호
- 나. 제 출 자 : 고성미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회 운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책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구성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직무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회의(안 제6조)
- 마. 자문 및 의견청취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- 바. 실비보상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구정의 주요정책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2조(기능)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, 정책의 연구·조사·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, 각종 의안 심사 시 자문, 그 밖에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  - 안 제3조(위원회의 구성)에서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.

- 안 제4조(위원의 해촉)에서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, 본인의 사임, 질병,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(위원회의 회의)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(자문)에서는 의원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,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(의견청취 등)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,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.
- 안 제9조(실비보상)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자문위원이 자문,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,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  
- 또한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,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- 붙임 1. 서울시 자치구의회 현황 1부  
2. 관련 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## 서울시 자치구의회 현황

- 의정자문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자치구의회 : 11개

〈2023년 10월 기준〉

연번	자치구의회	조례명	제정일자	구성요건
1	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	2011.09.15.	10명 이내
2	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조례	2015.04.03.	10명 이내
3	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20.11.05.	15명 이내
4	중 구	서울특별시 중구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	2017.08.23.	10명 이내
5	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08.12.19.	15명 이내
6	송파구	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3.08.16.	15명 이내
7	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2.01.01.	10명 이내
8	중랑구	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	2015.10.12.	15명 이내
9	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09.02.05.	10명 이내
10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04.05.15.	15명 이내
11	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	2019.01.03.	25명 이내

※ 자치구의회 위원회 구성인원

- 10명 이내(5개) : 동대문, 종로, 강동, 구로, 중구
- 15명 이내(5개) : 동작, 강남, 송파, 중랑, 은평
- 25명 이내(1개) : 서초

## 관계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**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**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